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2022. 11. 25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5일

-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「건축법」 제87조의2에 따라 우리 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4조)

- 도지사의 도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의무(제1항)
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(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축 안전 업무의 전문적·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.
- 상위법률인 「건축법」 제87조의2에서 임의규정이었던 ‘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’가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 의무규정으로 개정(2022. 1. 1. 시행) 됨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 조례에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위 센터 설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한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인바,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최근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지사의 센터 설치 근거를 의무화한 만큼 건축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염두에 두고 내실화 있는 센터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 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

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
2.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
3.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4.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
5.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
6.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
7. 시·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

8.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
9.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4조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</u> <u>2.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</u> <u>3.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u> <u>4.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5.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</u>

계획 수립

6.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
7. 시·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
8.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
9.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관련법령 발취

□ 건축법

제87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 ①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,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제21조, 제22조,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·확인·검토·심사 및 점검
- 1의2. 제11조,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
2.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
3. 삭제 <2019. 4. 30.>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건축법 시행령

제119조의3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.

□ 건축법 시행규칙

제43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(이하 “지역건축안전센터”라 한다)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·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
⑤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(이하 “필수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의 규모·예산·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건축공사장 안전관리,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구조 기술지원 등 건축물 생애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」를 설치·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(「건축법」 제87조의2)
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43조의2)

3. 관련조문

○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관련

「건축법」 제87조의2 ①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함

1. 제21조(착공신고), 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, 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및 제87조(보고와 검사 등)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·확인·검토·심사 및 점검
1의2. 제11조(건축허가), 제14조(건축신고) 및 제16조(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)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
2. 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

○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운용 관련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43조의2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 1.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
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
 - 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- ⑤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인력 중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(이하 “필수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 : 2023~2027년(5년)

○ 단가산출

- 운영비(「건축법」 제87조의2 관련 점검장비 구입) : 26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품명	금액	수량	품명	금액	수량
망원경	60	1	균열폭측정기	58	1
레이저거리측정기	350	1	열화상카메라	680	1
전자내시경	120	1	자동레벨측정기	450	1
슈미트해머	1,200	1	도막두께측정기	250	1
철근탐사기	22,000	1	안전화, 안전모	416	2

※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 1]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참조

- 인건비(필수인력 2명 채용) : 116,960천원

· 전문경력관(나군 11호봉* 1명 기준) : 58,479,580원

(단위 : 원)

구분	계	기본급	수당	정액급식비	명절휴가비	연가보상비	직급보조비
금액	58,479,580	35,457,600	7,354,000	3,360,000	7,091,520	1,016,460	4,200,000
산출	1명 기준	2,954,800원 ×12개월	가족수당 1,440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5,914천원	140천원×2 명×12개월	2,954,800 원×60%× 2명×2회	2,954,800 원×86%× 1/30×12일	175천원×2명×12개월

* 전문경력관 나군(일반직 6~7급 상당)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적용

나. 추계 결과 : 5년간 637,445천원 소요(전문인력 인건비, 센터 운영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출	142,960	120,181	122,446	124,753	127,105	637,445
인건비	116,960	119,181	121,446	123,753	126,105	607,445
운영비	26,000	1,000	1,000	1,000	1,000	30,000

※ 연평균 공무원임금인상률 1.9% 적용

다. 자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’23년)	2차년도 (’24년)	3차년도 (’25년)	4차년도 (’26년)	5차년도 (’27년)	계	
세 입	-	-	-	-	-	-	
세 출	142,960	120,181	122,446	124,753	127,105	637,445	
인 건 비	116,960	119,181	121,446	123,753	126,105	607,445	
운 영 비	26,000	1,000	1,000	1,000	1,000	30,000	
재원조달	142,960	120,181	122,446	124,753	127,105	637,445	
자체 수입	소 계	142,960	120,181	122,446	124,753	127,105	637,445
	지방세	142,960	120,181	122,446	124,753	127,105	637,445
	세외수입	-	-	-	-	-	-